



대전지방국세청

합의당세무
대전지방국세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5.6.2.부터 장의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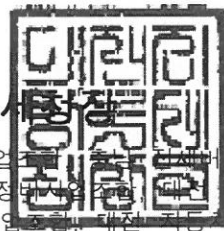
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해당 미발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등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따르므로

4.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귀 협회 차원에서도 소속 회원들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불임의 리플릿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 '15.4.16 불임1의 안내문을 전체 사업자에게 우편발송하였으며
귀 협회에서도 불임 리플릿을 「협회 홈페이지, 이메일, 유인물」 등을 통한 홍보 및 회원모임에 리플릿배부요망

불임 :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안내문 1부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리플릿) 1부. 끝.

대전지방국세청



수신자 충북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대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충남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협동조합, (사)대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사)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대전 자동차정비업사업조합,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충남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대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충북 자동차전문정비충주시지회, 충북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충남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사)충북 한국장례업협회지회, (사)대전 한국장례업협회지회, (사)충남 한국장례업협회지회

국세조사관

박수혜

국세조사관

엄기봉

★개인납세1 전결 2015. 5. 13.

과장

이두희

협조자

시행 개인납세1과-898

(2015. 5. 13.)

접수

우 306-70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

/ <http://www.nts.go.kr>

전화번호 0426203385

팩스번호 05031131158

/ psh0153@nts.go.kr

/ 비공개(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 말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장의관련 서비스업이 2015년 2월 3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2015.5.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고(2015.3.1. 이후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업 종	국세청 업종코드
자동차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922201) 자동차 전문수리업(92220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503002)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503004) 카인테리어(503005) * 소매업에 한함
전세버스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602205)
장의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30301)

또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면 세금도 추징하게 되오니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여 의무발급대상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가입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가입방법) ①~③ 중 선택(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공지사항 참조)

- ①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체에 의뢰
- ②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상 호	홈 페이지	연 락 처
(주)케이티	www.hellocash.co.kr	02) 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taxadmin.dacom.net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www.moneyon.com	1544-7300
(사)금융결제원	www.kftcva.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taxsave.nicevan.co.kr	02) 2187-2700

③ 세미래콜센터 ☎ 126 (현금영수증) ARS를 이용하여 가입

☎126 ①(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②번(상담센터 연결)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비밀번호(4자리) ⇒ ①번(가맹점 가입)

■ (미가입시 불이익)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 의무

■ (발급의무 기준금액) 거래 상대방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

*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

■ (미발급시 불이익) 미발급금액 × 50% 과태료 부과(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

■ (부착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사업장 출입문 입구'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함

■ (미부착시 불이익)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